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간담회)

일 시	2016.11.9.(수) 16:00 - 17:20	장 소	성북배움터(구청 3층)
참석자	9명(김경옥, 김수정, 김지희, 박다혜, 손민호, 윤성봉, 윤정섭, 이진수, 이철)		
회 의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시작 ○ ○○○ : 정족수가 부족하여 간담회로 진행한다. 심의사항만 빼고 모두 것처럼 진행하면 될 것 같다. ○ ○○○ : 보고사항부터 진해하도록 하겠다. ○ ○○○ : 지난 회의 결과 설명, 인권영향평가 진행 과정 설명.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부서 의견 설명 ○ ○○○ : 미수용이면 그냥 끝나는 건가 ○ ○○○ : 부서에서 미수용하면 근거나 설명을 다시 전화통화하든지 해서 전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 ○○○ : 재권고말고는 없다 ○ ○○○ : 무지개센터와 관련해서 재권고한 적이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재권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의견서 제출 같은 것을 하기도 하는데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수용하는 것은 많지 않고 부분 수용, 유보의견도 많다. 보육관련 조례에서도 남성들이 없어서 성별 할당 규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 ○○○ : 조례를 만들때는 의회에서 하지 않나 ○ ○○○ :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구청장이 발의하는 것만 하고 있다 ○ ○○○ :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이 심의할 때 설명하지 않나 ○ ○○○ : 그것은 조례 제정안 인권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와서 설명하는 것이지 반영여부에 관한 부서의견을 줄 때는 참석하지 않는다. ○ ○○○ :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관련 종사자가 적다는 이유로 성별 할당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 ○○○ : 여성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면 통계자료라도 올려주던 지 해야 할 것 같다. 			

회 의 내 용
○ ○○○ :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하는 분이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 ○○○ :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설명 및 숙지
○ ○○○ :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은 판단 근거가 모호하여 미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 ○○○ : 이 문구는 인권센터에서 만든 것이니까 인권차별이 없으면서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 ○○○ : 장기가 1주일 2주일이나 한달이나 두달이나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1달, 3달 등 장기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 ○○○ : 장기치료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왜 인권침해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구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 ○○○ : 차별이다 아니다 라는 감수성이 중요한데 조례상에 더 정확한 규정을 필요로 했던 것 같다.
○ ○○○ : 심신장애라는 말은 법률에 있는 표현이니까. 장기치료라는 말이 더 불명확한 표현이라는 뜻인 것 같다.
○ ○○○ : 장기치료를 더 명확히 해주는 것은 중요한 것 같다. 사실 방점은 뒤에 있는 것인데.
○ ○○○ :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라고 해도 되는데.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연속으로 불참하는 것도 판단기준이 되기 어려운 것 같다.
○ ○○○ : 그렇게 불명확하다는 생각 안 든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데. 심신장애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불명확하다.
○ ○○○ :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건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역량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포괄적인 문제 인 것 같다. 그런데 심신장애로 인하여 라고 한다면 이 말자체가 차별적이기 때문에 의견이 준 것이 아닌가.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뒷부분이 조금 불분명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 ○○○ : 교사적무연수, 직원인권교육 실시 설명. 교육이 의무화되었을 때 그 교육이 형식화되기 쉽다. 비슷한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교육대상자에게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조사가 있다. 이번에는 소규모의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해보았다.

회 의 내 용

- ○○○ : 인권영향평가 시행 5주년 평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인권담당 공무원, 인권관련 단체 등에서 40명 정도가 오셨는데 나왔던 얘기들은 제도로써는 정교하지 않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인권영향평가 관련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 ○○○ : 2017년 인권센터 시행계획 설명. 인권도시 역량강화,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크게 세 분야가 있다. 내년 실태조사 사업은 올해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할지 고민 중이다. 인권도시지방협의회는 내년에 창립총회도 하고 할 계획이다.
- ○○○ : 인권 교육할 때 강사풀은 어떻게 되는지
- ○○○ : 특별히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특별히 주제가 잡히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섭외한다.
- ○○○ : 인권위원이 인권교육 기획회의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 ○○○ :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 : 구체적인 교육기획보다는 다양성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어디에 방점을 두든지 하는 것을 정하면 좋을 것 같다.
- ○○○ :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외주를 준다. 인권교육의 모토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서 실시하고 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 그 해의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나 그런 것 없이 실시되는 것 같다.
- ○○○ : 크기는 인권감수성 향상인데 좀 더 세부 목표가 잡혀있지는 않았다.
- ○○○ : 실태조사 보고는 공개되어 있나
- ○○○ : 그렇다
- ○○○ :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센터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 ○○○ : 구의회에서는 외부용역을 준다는 것에 방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다. 서울시에서도 실태조사 많이 하는데 왜 구에서 또 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한다.
- ○○○ : 유관부처에서도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정리를 해 두면 좋을 것 같다.
- ○○○ :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제안 정책은 놀권리 충족이라든지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담당하여 수행하게 된다.
- ○○○ : 그런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청소년인권실태조사

회 의 내 용

- ○○○ : 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거기서도 하는데 성북구는 성북구만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실태조사에 접근하는지 하는 궁금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 : 중요한 것은 왜 성북구는 이런 조사를 중복해서 또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북구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느냐하는 것에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왜 하느냐보다는 얼마큼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 ○○○ : 다음번 회의는 12월에 해야 하는데 워크숍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
- ○○○ : 날짜는 12.21(수)로 하고 오후 3시에 시작해서 늦어도 6시반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
- 회의종료
- ※ 회의내용 중 주요논의 및 의견사항에 대해 요약 작성하였음.